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9호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0 4 호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공 영 개 발 과 2
○ 공	고 제 2 0 7 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도 시 재 생 과 6
○ 공	고 제 2 0 9 호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제 2 0 9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11
○ 공	고 제 2 1 1 호	공고	
○ 공	고 제 2 1 1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자 동 차 관 리 과 14
○ 공	고 제 2 1 2 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민 원 봉 사 과 18
○ 공	고 제 2 1 3 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민 원 봉 사 과 19
○ 공	고 제 2 2 7 호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0
○ 공	고 제 2 2 8 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 무 과 29
○ 공	고 제 2 2 9 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총 무 과 39
○ 공	고 제 2 3 1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 무 과 44
○ 공	고 제 2 3 4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총 무 과 51
○ 공	고 제 2 3 7 호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방 재 하 수 과 57
○ 공	고 제 2 4 2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58
○ 공	고 제 2 5 1 호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60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1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3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8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호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3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91
○ 의회사무국공고 제	6 호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00

고 시

○ 고	시 제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08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04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12. 17.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6 일원
3. 사업 시행자: 남동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35-5685)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공시송달 대상: 공시송달 대상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폐문 부재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2. 1. 25. ~ 2022. 2. 9.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공시송달 대상[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보상금 내역(토지)

[별지 제1목록]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21수용0097)

수 용 토 지 의 표 시					보 상 액(원)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단가/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금액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6	답	답	76㎡	466,500 35,454,000	이*호	인천광역시 동구 **동***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동 ****호(**동, **아파트)
"	"	"	"	"		"	"	김*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동 ****호(**동, **아파트)
"	"	"	"	"		"	"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 **, *동 ***호(**주택)
"	"	"	"	"		"	"	김*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 ***동 ****호(**동, **아파트)
"	"	"	"	"		"	"	최*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번길 *, ***동 ***호(**동, **그린빌)
"	"	"	"	"		"	"	최*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길* ***동 ***호(**동*가, **아파트)
"	"	"	"	"		"	"	한*복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번길***, *동 ***호
"	"	"	"	"		"	"	한*자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77번길 **, ***동 ***호
"	"	"	"	"		"	"	한*옥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호
"	"	"	"	"		"	"	한*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봄**, ***동 ***호
"	"	"	"	"		"	"	한*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길 **, ***호

제1659호

남동구 구보

2022. 1. 27. 목요일

	"	"	"	"	"		"	"	함*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동 ***호	
	"	"	"	"	"		"	"	홍*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동 ***호(**동, **빌라)	
	"	"	"	"	"		"	"	홍*자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동 ***호(**동, **아파트)	
	"	"	"	"	"		"	"	홍*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 ***동***호(**동, **)	
	"	"	"	"	"		"	"	홍*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동 ****호(**동, **아파트)	
	"	"	"	"	"		"	"	홍*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동)	
	"	"	"	"	"		"	"	홍*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 ***동***호(**동, **아파트)	
	"	"	"	"	"		"	"	홍*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동 ****호(**동, **아파트)	
토 지 합 계	1필지				76.000	35,454,0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07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1-54호(2011.7.1.)로 사업시행인가 된 상인천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통지가 불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7-3 일원
3. 사업시행자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공고기간 : 2022. 1. 26. ~ 2022. 2. 11. (14일 이상)
5.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6. 공시송달 문건 :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문 및 통지공문(붙임-1, 2, 3)
7. 공시송달 대상 : 별지(붙임-4)
8. 기타사항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8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47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1-54호(2011.7.1.)로 사업시행인가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7-3 일원
3. 사업 시행자: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1. 20. ~ 2022. 2. 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453-8393)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 403호(☎032-421-46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용재결 열람공고 통지공문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최만찬 남동구



남 동 구



수신 열람대상자(토지, 지장물, 영업권) 귀하
(경유)

제목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및 손실보상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공고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며,
3. 수용대상 토지등소유자 및 영업권자 등 관계인은 공고 내용 열람 및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 032-453-8393)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고문(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부.
2. 의견서 1부. 끝.

남 동 구



주무관 박지윤 도시정비 담당 박효준 전일 2022. 1. 17.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협조자

시행 도시재생과-747 (2022. 1. 17.) 접수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032-453-8393 팩스번호 032-453-2959 / ranshelly@korea.kr / 비공개(6)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참그GO!

[붙임-3] 수용재결 열람공고 통지(2차)공문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최안전 남동구

남 동 구



수신 열람대상자(토지, 지장물, 영업권) 귀하
(경유)

제목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통지(2차)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및 손실보상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공고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며,
3. 수용대상 토지등소유자 및 영업권자 등 관계인은 공고 내용 열람 및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 032-453-8393)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고문(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부.
2. 의견서 1부, 끝.

남 동 구



주무관	박지윤	도시정비 담당	박효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전일 2022. 1. 25.
협조자						
시행	도시재생과-1200	(2022. 1. 25.)	접수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8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032-453-8393	팩스번호	032-453-2959	/	ranchely@korea.kr	/ 부분공개(8)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

[붙임-4] 수용재결 열람공고 공시송달 대상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및 영업권자			비고
	동(리) 명	관련 지번	관련 대상	성명	현주소	
1	간석동	308-13	토지	강*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7번길 *(간석동)	수취인불명
2	간석동	309-17	토지	김*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8(주안동)	주소불명
3	간석동	309-17	토지	유*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	주소불명
4	간석동	309-17	토지	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	주소불명
5	간석동	309-17	토지	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간석동)	주소불명
6	간석동	309-17	토지	한*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	주소불명
7	간석동	321-15	토지	최*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3*-14	주소불명
8	간석동	322-16	토지	고*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15번길 12, *동 90*동(오류동, 신동아아파트)	주소불명
9	간석동	322-16	토지	임*택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3*5-10	수취인불명
10	간석동	322-16	토지	박*복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9번길 3*-3(원미동)	주소불명
11	간석동	323-11	토지	장*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번길 67	주소불명
12	간석동	325-34	토지	신*찬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충1길 18-*	수취인불명
13	간석동	329-13	토지	박*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46-*	주소불명
14	간석동	419-18	토지/건물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15번길 13, *동 20*호(간석동, 태창빌라)	수취인불명
15	간석동	425-31	토지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44, 20*호(간석동, 경인빌라)	수취인불명
16	간석동	425-25	토지	고*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55번길 39-*	수취인불명
17	간석동	425-25	토지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0, 10*동 150*호(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수취인불명
18	간석동	454(10*호)	토지/건물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21*동 30*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수취거절
19	간석동	327-9 (인테리어넛은 세상)	영업권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30번길 1*(간석동)	수취인불명
20	간석동	327-9 (가마지기)	영업권	윤*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30번길 1*(간석동)	수취인불명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09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1.25. ~ 2022.2.9.(15일)
3. 공고대상 : 이륜차 4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71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9. ○ 견인일 : 2022.1.21.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사잇길
	2021-007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9. ○ 견인일 : 2022.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2021-007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0. ○ 견인일 : 2022.1.1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1-007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0. ○ 견인일 : 2022.1.1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1-007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사잇길	2022.1.21.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1-007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2022.1.3.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1-007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2.1.12.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1-007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2.1.12.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1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1.25. ~ 2022.2.9.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01마3561 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6 23	01마3561	에쿠스	장*욱 64****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9*-*(상봉동)	(주)인천폐차 사업소/ 2021.11.9.	서울중랑경찰서 중랑구(세무과,교통지도과) 서울중구(교통지도과)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주차지도과) 광명시(지도민원과) 용산구(교통지도과) 부산광역시(교통행정과) 부산중구(교통행정과) 해운대구(교통행정과) 부산남구(교통행정과) 서울노원구(교통지도과) 강동구(교통관리과) 도봉구(교통지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금정구(교통행정과) 서초구(주차관리과) 금천구(주차관리과) 성남시분당구(경제교통과) 영등포구(주차문화과) 서울시(교통지도과) 고양시일산동구(교통행정과) 양천구(교통지도과) 구로구(주차관리과) 관악구(교통지도과) 강남구(주차관리과) 주-상업상호저축은행
2021-006 26	53버6480	마티즈	이*복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1*번길 1*,	(주)인천폐차 사업소/	남동구(자동차관리과,세무과,교통행정과) 연수구(차량민원과)

				*동 20*호(만수동, 영진다세대주택)	2021.11.17 .	서울시(교통지도과) 덕양구(교통행정과) 대전중구(세무과)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인천남동경찰서
2021-006 28	56고1728	그랜저	김*금 6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32*	(주)인천폐차 사업소/ 2021.11.10 .	계양구(세무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화성시(세정과,징수과) 인천서구(교통행정과) 구로구(징수과)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화성서부경찰서 시흥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납세협력담당관) 인천지방법원 현대캐피탈(주)
2021-006 32	인천80러10 97	포터초장 축슈퍼캡 냉동탑차	(주)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1*번길 3*, 남동공단3*BL-*LT	(주)인천폐차 사업소/ 2021.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인천광역시(세정과) 남동구(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과) 현대캐피탈(주) 인천지방법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623	01마3561	에쿠스	만수서로83번길 63-4 신대동아파트	장*옥	64****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9*-(상봉동)	2021.11.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626	53버6480	마티즈	하촌서로 17번길 21번지 영진빌라 A동 주차장 1층	이*복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1*번길 1*, *동 20*호(만수동, 영진다세대주택)	2021.11.17.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628	56고1728	그랜저(GRAND EUR)	간석동 191-3 희망빌라 A동 1층주차장	김*금	6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32*	2021.11.10.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632	인천80러1097	포터초장축수퍼캡냉동탑차	남동대로 155번길64 누리시스템 앞	(주)티*스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0번길 3*, 남동공단3*BL-*LT(남촌동)	2021.11.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212 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5.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공인 파손에 따른 신조(폐기)
-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2. 1. 27.
- 신조(폐기) 공인 수 : 1개
- 신조(폐기) 공인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명	서체및규격(cm)
1	신조 공인	서창2동	서창2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2	폐기 공인	서창2동	서창2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213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5.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공인 파손에 따른 신조(폐기)
-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2. 1. 27.
- 신조(폐기) 공인 수 : 1개
- 신조(폐기) 공인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및규격(cm)
1	신조 공인	서창2동	서창2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2	폐기 공인	서창2동	서창2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27호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22.01.13.)됨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2조, 제3조)
-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안 제4조)
-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안 제5조~제7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운영세칙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22.01.13.)됨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2조, 제3조)
-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안 제4조)
-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안 제5조~제7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운영세칙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지원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28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 (안 제2조제2항)
-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 상향 조정
- 그 밖에 개정안 반영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3,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 (안 제2조제2항)
-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 상향 조정
- 그 밖에 개정안 반영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61(2019.4.16.) 호 및 인천광역시 총무과-6209(2019.4.19.)호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비를”을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중”으로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강제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생활환경민원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의약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체납차량 영치 및 교부청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직접 기동정비 현장 지원·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보육시설 지도(현장) 점검·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문서사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시청출입)	
	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상시출장비를</u> 지급할 수 있다. ② <u>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u>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 -- <u>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u> 일괄 ----- --. ② <u>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u>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u>2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u>2배</u>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 <u>5배</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5배</u>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

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 8. (생략)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

-- 「공무원 여비 규정」 --

-----.

6. ~ 8. (현행과 같음)

9. -----
----- 중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61(2019.4.16.)호 및 인천광역시 총무과-6209(2019. 4. 19.)호
 - 현재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된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도모

□ 「지방공무원법」

-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29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 방법을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3,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끝.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 방법을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

☐ 본 문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1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문구 및 세액공제 금액 변경 (안 제7조제1항)
 - 제1호: 고지서 1장당 “150원” 을 “500원” 으로,
 - 제2호: “방식 따른” 을 “방식에 의한” 으로, 고지서 1장당 “500원” 을 “1천원”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12.28.)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문구 및 세액공제 금액 변경(안 제7조제1항)
 - 제1호: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 제2호: “방식 따른”을 “방식에 의한”으로, 고지서 1장당 “500 원”을 “1천원”으로 개정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50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식 따른” 을 “방식에 의한” 으로, “500원” 을 “1천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	1. ----- ----- ----- <u>500원</u>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2. ----- <u>방식에 의한</u> ----- ----- <u>1천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제목개정 2017. 12. 2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4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5조제3항제1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5조제3항제1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제15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u>10년</u>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 <u>5년</u> ----- ----- ----- ----- ----- -----. ----- ----.
<신설>	1. 재직기간 <u>5년 이상 10년 미만</u> : <u>5일</u>
1. 재직기간 <u>10년 이상 20년 미만</u> : <u>10일</u>	2. ----- -- <u>20일</u>
2. · 3. (생략)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237호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요

수계명	소하천명	구 분	구 간			하천 연장 (km)
			시점	종점	면적(㎡)	
신천	음실천	기존(소하천 예정지)	운연동 268	운연동 459-35	20,384	1.28
		금회(소하천 구역)	운연동 268	운연동 451-1	13,899	0.525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2. 1. 27.(목) ~ 2. 11.(금)
- 공람장소: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소하천(음실천) 구역 지형도면 및 지번조서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1. 27.(목) ~ 2. 11.(금) 17:00
-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
- 관련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032-453-8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1.(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이*남	인천81바**3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복	인천86바**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우	인천86바**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철	인천84바**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영	인천84바**5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권	인천85사**5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경	인천86바**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69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신*수	인천86바**8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진	인천84바**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6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영	인천81사**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66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천	인천83바**2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주식회사 더*림	인천83사**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51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체육진흥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1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2.1.13)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련 법안 조문 정비
-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순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3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이정순의원

찬 성 자 : 김안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2.1.13)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법안 조문 정비
-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무분장)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무국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4.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징계·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와 청결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 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및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8.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9. 각종 의안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2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21.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2.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4.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의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 위원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정책 지원관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예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인)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

게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2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정순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4
----------	------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이정순의원
찬 성 자 : 김안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3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정비하며 실효성이 없어진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
(이정순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5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이정순의원

찬 성 자 : 김안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정비하며 실효성이 없어진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4호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남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안나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6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김안나의원

찬 성 자 : 최재현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수당) 및 제3조(여비)에 따라 면접위원 수당 및 여비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남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인)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30 조례 제 67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75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5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당직자 근무시간, 당직근무자 휴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당직근무자 수당, 당직명령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당직근무자 근무절차, 준수사항, 임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 비상근무 발령, 근무요령 및 응소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8조)

○ 직원연락체계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조성민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7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조성민의원

찬 성 자 : 반미선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당직자 근무시간, 당직근무자 휴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당직근무자 수당, 당직명령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당직근무자 근무절차, 준수사항, 임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 비상근무 발령, 근무요령 및 응소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8조)
- 직원연락체계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실시) ① 일직 및 숙직은 비상시에만 실시하며 평시에는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세운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③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액은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 · 외의 방법,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재난사고 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신속 · 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

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비상소집) 남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13조의 사항으로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제16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평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18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상황처리반·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제19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6호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 ~ 2. 3.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최재현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8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발 의 자 : 최재현의원

찬 성 자 : 김안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 대 리 직 위:
2. 대리자 직 성명:
3. 대 리 기 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68 (구월동) 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97번길 41 (고잔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7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68 (구월동)	2009.11.16.	문화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문화서로 68 기초구간에위치하여68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20-7, 320-2, 32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70 (운연동)	2009.11.16.	행정구역명(운연동)을 이용하여 운연로로 제명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운연로 17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0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6 (논현동)	2009.11.16.	옛날에 은이 나왔던 마을이 있었다는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은봉로 26 기초구간에위치하여26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5번길 19 (만수동)	2009.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구월말로85번길 19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27 (간석동)	2009.11.16.	석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석촌로46번길 27 기초구간에위치하여27을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17 (간석동)	2009.11.16.	간석초등학교 북쪽 샘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인용하여 제명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용천로 1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7을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601-8 (운연동)	2009.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22.1.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601-8 기초구간에위치하여3601-8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97번길 41 (고잔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40 (구월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번길 10-11 (구월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8 (만수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9 (만수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4 (만수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18-5 (만수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6번길 36-12 (만수동)	2022.1.2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